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임 채 오



2022년 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훈령 제25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7. 의원등록관리 활동상황,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란 다음에 “8. 인사관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8. 예산운영”란을 “9. 예산운영”란으로 하고, “9. 홍보에 관한 사항”란을 “10. 홍보에 관한 사항”란으로 하며, “10. 일반사항”란을 “11. 일반사항”으로 한다.

부서별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의 장		
			사무과장			
의 회 사무과	8. 인사관련	가. 직원 전·출입 동의(추천)		○		
		나. 사무과 내 전보	○			
		다. 직원 사무분장	○			
		라. 상훈(표창) 상신	○			
		마. 근무성적 평정	○			
		바. 교육훈련자 선정 및 교육 명령	○			
		사. 사무인수인계	○			
	9. 예산운영	가. 의회예산(안)편성 및 요구			○	
		나.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		○		
		다. 의정활동관련 예산집행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
				○		

부서별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의 장	
			사무과장		
의 회 사무과	10.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자료수집계획	○		
		나. 의회사 편찬		○	
		다. 의정활동 홍보 기본계획수립		○	
		라. 홈페이지 관리	○		
	11. 일반사항	가. 접수문서의 선결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	
		나. 보안관리		○	
		다. 문서, 공인관리		○	
		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신청		○	
		마. 차량관리		○	
		바. 물품관리		○	
		사. 기록물관리		○	
		바. 직원의 복무 및 징계		○	
		아. 의장포상			○
자. 신분증 신규 및 재발급		○			

##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별표 대비표

현					개정안					
[별표 1] 사무 위임 전결 사항					[별표 1] 사무 위임 전결 사항					
부서별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	의장	부서별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전결	의장	
			권자					권자		
			사무					사무		
			과장					과장		
의 회 사무과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8. 인사관련	가. 직원 전·출입 동의(추천)		○		
						나. 사무과 내 전보	○			
						다. 직원 사무분장	○			
						라. 상훈(표창) 상신	○			
						마. 근무성적 평정	○			
					바. 교육훈련자 선정 및 교육 명령	○				
					사. 사무인수인계	○				
	8. 예산운영	가. 의회예산(안)편성 및 요구		○		9. 예산운영	가. 의회예산(안)편성 및 요구		○	
		나.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		○			나.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	○		
		다. 의정활동관련 예산집행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			다. 의정활동관련 예산집행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	
	9.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자료수집계획		○		10.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자료수집계획		○	
		나. 의회사 편찬		○			나. 의회사 편찬		○	
		다. 의정활동 홍보 기본계획수립		○			다. 의정활동 홍보 기본계획수립		○	
	10. 일반사항	가. 접수문서의 선결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일반사항	가. 직원의 복무 및 징계		○	
		나. 직원사무분장		○			나. 접수문서의 선결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다. 문서관리		○			다. 문서, 공인관리		○	
		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신청		○		라. 보안관리		○		
		마. 공무원의 복무 및 상벌		○		마. 기록물 관리		○		
						바. 물품관리		○		
					사. 차량관리		○			
				아.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신청		○				
				자. 의장포상		○				
				차. 신분증 신규 및 재발급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과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의장에게로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위임 전결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인사 관련 업무 추가(안 별표 1)